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07
----------	-------

발의연월일 : 2026. 5. 11.

발 의 자 : 서왕진 · 정춘생 · 김재원  
박은정 · 강경숙 · 백선희  
김준형 · 김선민 · 차규근  
신장식 · 황운하 · 이해민  
의원(12인)

제안이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고 평택시 등 기지 이전지역의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그에 따른 주둔의 지속으로 평택시 등 주민들은 교통혼잡, 소음, 생활환경 변화, 기반시설 부족 등 일상적 불편을 계속 겪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 내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유효기간을 두는 한시법 구조로 운영되어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국고보조금 지원 보조율에 관한 핵심사항이 허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주민 편익사업과 생활 SOC 확충사업이 지

속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지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 증가한 교통수요와 생활권 단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대중교통, 환승체계 등 교통개선대책을 주민 생활편의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지원체계를 상시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행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의 주민 일상회복을 위한 교통개선대책의 수립과 시행 근거 명문화(안 제15조의2).
- 나. 국고보조금 인상지원보조율 규정 정비(안 제29조).
- 다. 현행법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정해진 유효기간 내 완료되지 못하고 계속 연장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유효기간 폐지(안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및 제3항 삭제).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혼잡, 통행불편 및 생활권 단절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통행이 많은 도로의 신설·확장 및 연결도로 개선
2. 대중교통 노선 확충 및 환승체계 개선
3. 통학·통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4. 그 밖에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환경 개선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의 보조금은”을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은”으로, “대

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5조의2(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미준기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혼잡, 통행불편 및 생활권 단절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주민통행이 많은 도로의 신설·확장 및 연결도로 개선</u></li> <li><u>2. 대중교통 노선 확충 및 환승체계 개선</u></li> <li><u>3. 통학·통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시설 확충</u></li> <li><u>4. 그 밖에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환경개선사업</u></li> </ol> <p><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u></p>

제2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평택시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① -----  
 -----  
 -----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은-----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